

의안 번호	457
----------	-----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 02. 21.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457호
- 다. 제출일자 : 2022. 02. 11.
- 라. 회부일자 : 2022. 02. 11.

2. 제안이유

-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2년 7월에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 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위탁 대상 시설

- 1) 시설명 : 다윗어린이집
- 2) 소재지 : 고려대로7길 120(동선동)
- 3) 위탁기간 : 2022.07.05. ~ 2027.07.04.(5년)
- 4) 위탁심의 :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 결정(2022.04.예정)

나. 위탁사업의 범위 :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검토의견

□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다윗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7월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법인을 대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재위탁¹⁾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재 위탁 대상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시설명 (원장)	소재지/ 건축면적	현 위탁체 (대표)	현 위탁기간	정원/현원	추진경과
다 윷 (이경자)	· 고려대로7 길 120 (동선동) · 건축면적: 496m ²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정순택)	2017.07.05 ~ 2022.07.04	49/38	· 최초 위탁 약정 및 10년 무상임대 협약체결(2007.07.05.) · 재 위탁 약정 및 10년 무상 사용 협약체결(2017.07.04.) · 구의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2022. 02.)

□ 민간위탁 및 재위탁 적정성 검토

- 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²⁾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제1항³⁾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1) 재위탁이란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 2)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서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 조례」 제14조제1항4)에 위탁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위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관련 별표 8의25), 「영유아 보육조례」 제14조제1항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하려는 것으로 적합하다 판단되며, 위탁업무의 내용은 통상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재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구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사항을 협약 내용을 기준으로 당사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표 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